##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86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이정문・민형배・이학영

채현일 • 문진석 • 박 정

김원이 · 이연희 · 이재관

문금주 • 홍기원 • 조승래

서영석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등"이라 한다)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의 이용대가(이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매매업자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최근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받은 청약증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의 전부를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증권사의 수익으로 처리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청약증거금이 개인과 법인 등 일반투자자 가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공모에 참여하여 주식을 사고자 할 경우 계 약금 명목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예탁하는 투자자예탁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금융당국에 통보한 바 있음.

이에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예탁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투자자들이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자매매업자등의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중 "투자자로부터"를 "청약증거금 등 투자자로부터"로 한 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투자자예탁금이용료)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의 이용대가(이하 이 조에서 "투자자예탁금이용료"라 한다)를 협회가 정하는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자예탁금이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	①
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 <u>투자자</u>	<u>청약증</u>
<u>로부터</u>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금 등 투자자로부터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	
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	
권금융회사에 예치(預置)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74조의2(투자자예탁금이용료)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
	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의 이용
	대가(이하 이 조에서 "투자자
	예탁금이용료"라 한다)를 협회
	가 정하는 산정기준 및 지급절
	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지급하
	<u>여야 한다.</u>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산정
	기준을 정함에 있어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
	자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u>산정하여야 한다.</u>